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739호 2023. 2. 14.(화)

조 례

| | |
|---|----|
| 남해군 조례 제2659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 1 |
| 남해군 조례 제2660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 |
| 남해군 조례 제2661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 남해군 조례 제2662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 |
| 남해군 조례 제2663호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 14 |
| 남해군 조례 제2664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규 칙

| | |
|--|----|
| 남해군 규칙 제1220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20 |
|--|----|

훈 령

| | |
|--|----|
| 남해군 훈령 제354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규정 | 29 |
|--|----|

고 시

| | |
|--|----|
| 남해군 고시 제2023-10호 소하천정비사업 준공고시 | 33 |
| 남해군 고시 제2023-1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 42 |
| 남해군 고시 제2023-12호 군계획시설[꽃별테마공원: 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45 |
| 남해군 고시 제2023-13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 52 |
| 남해군 고시 제2023-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6 |

공 고

| | |
|--|----|
| 남해군 공고 제2023-10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57 |
| 남해군 공고 제2023-127호 2023년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58 |
| 남해군 공고 제2023-134호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63 |
| 남해군 공고 제2023-13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67 |
| 남해군 공고 제2023-150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68 |
| 남해군 공고 제2023-153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문 | 72 |
| 남해군 공고 제2023-163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 74 |
| 남해군 공고 제2023-168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6 |

| | | | | | | | | | |
|-----|--|--|--|--|--|--|--|--|--|
| 회 략 |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59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남해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수산인·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판매 및 할인행사 등) 및 유통 활성화, 물류 개선사업 등 지원
3. 패류 지역특화품종 및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4. 남해다름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5.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6.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수출 관련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8.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9.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사업
11.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수산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0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5. “저공해 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다.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남해군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된다.

1.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별표17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3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1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남해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호(중전의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를 “법 제17조” 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바이오가스화시설
-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5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남해군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2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해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체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및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체를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패 수여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변경
2.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예방 우수사업체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나.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 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3호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통하여 남해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수·축·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제조·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남해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남해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 업무 부서장 및 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남해군의회 의원
 - 나.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 마. 그 밖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4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하고, 제1항제7호 중 “우렁이”를 “우렁이, 친환경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하우스, 농기계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0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
 - 다.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 2. 식품접객업 : 별표 2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1.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연기·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진열·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연기·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라. 영업장 안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마. 영업장 내·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바. 손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세척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 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아.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진열·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이동판매대의 구조 및 재질 등

- 가.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 (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 나. 이동판매의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한다.
- 다. 이동판매대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재료

-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3. 조리식품

- 가. 식품은 뚜껑 이나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4.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구용기

-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6. 개인위생관리

-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7. 주변환경

-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4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규정**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규정**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훈 령 】

남해군 훈령 제297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항 적용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
2. “문화관광형시장” 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정한 시장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 라 함은 남해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남해전통시장구역 내 이동 판매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2조제4호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고, 남해전통시장구역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조건 부여) ① 이 규정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군수가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육성사업단 및 시장 상인회와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 취소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증 교부) 남해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 품목별 영업신고증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5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군수,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육성사업단 및 시장상인회,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 된 때
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영업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
3.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한 때
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기타) 본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0호

소하천정비사업 준공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정거소하천 정비공사」이 완료되어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남 해 군 수

1. 소하천정비사업 개요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 나. 정비사업의 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13 ~ 석평리 산95-2번지 일원
-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01. 30.
 - 준공일자 : 2022. 06. 30.

2.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 나.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 편입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4.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1천500분의 1이상 지적이 표시된 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였으며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리청 :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붙임] 편입토지 세목조서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 | 석평리 | 산80-2 | 임 | 3 | 3 | 남해군 | 남해군 | | | |
| 2 | 석평리 | 산96-1 | 임 | 138 | 138 | | | | | |
| 3 | 석평리 | 1019-3 | 답 | 169 | 169 | | | | | |
| 4 | 석평리 | 1018-1 | 답 | 6 | 6 | | | | | |
| 5 | 석평리 | 1020-1 | 답 | 4 | 4 | | | | | |
| 6 | 석평리 | 1018-2 | 답 | 12 | 12 | | | | | |
| 7 | 석평리 | 1021-1 | 답 | 30 | 30 | | | | | |
| 8 | 석평리 | 1017-1 | 답 | 8 | 8 | | | | | |
| 9 | 석평리 | 1022-1 | 답 | 75 | 75 | | | | | |
| 10 | 석평리 | 1024-4 | 답 | 52 | 52 | | | | | |
| 11 | 석평리 | 산98-1 | 임 | 4 | 4 | | | | | |
| 12 | 석평리 | 1025-1 | 답 | 102 | 102 | | | | | |
| 13 | 석평리 | 1026-1 | 전 | 42 | 42 | | | | | |
| 14 | 석평리 | 1027-7 | 전 | 45 | 45 | | | | | |
| 15 | 석평리 | 1028-1 | 전 | 12 | 12 | | | | | |
| 16 | 석평리 | 1030-1 | 전 | 33 | 33 | | | | | |
| 17 | 석평리 | 1031-4 | 대 | 14 | 14 | | | | | |
| 18 | 석평리 | 1000-4 | 답 | 29 | 29 | | | | | |
| 19 | 석평리 | 1001-1 | 답 | 78 | 78 | | | | | |
| 20 | 석평리 | 1002-1 | 대 | 11 | 11 | | | | | |
| 21 | 석평리 | 1003-5 | 답 | 33 | 33 | | | | | |
| 22 | 석평리 | 561-3 | 답 | 7 | 7 | | | | | |
| 23 | 석평리 | 561-4 | 답 | 33 | 33 | | | | | |
| 24 | 석평리 | 559-5 | 답 | 57 | 57 | | | | | |
| 25 | 석평리 | 402-2 | 창 | 4 | 4 | | | | | |
| 26 | 석평리 | 402-3 | 전 | 5 | 5 | | | | | |
| 27 | 석평리 | 556-5 | 대 | 67 | 67 | | | | | |
| 28 | 석평리 | 403-1 | 전 | 49 | 49 | | | | | |
| 29 | 석평리 | 404-1 | 전 | 3 | 3 | | | | | |
| 30 | 석평리 | 556-4 | 대 | 3 | 3 | | | | | |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31 | 석평리 | 556-6 | 도 | 1 | 1 | 남해군 | 남해군 | | | |
| 32 | 석평리 | 405-5 | 대 | 1 | 1 | | | | | |
| 33 | 석평리 | 411-4 | 도 | 2 | 2 | | | | | |
| 34 | 석평리 | 406-1 | 답 | 23 | 23 | | | | | |
| 35 | 석평리 | 411-3 | 대 | 100 | 100 | | | | | |
| 36 | 석평리 | 414-1 | 대 | 30 | 30 | | | | | |
| 37 | 석평리 | 405-6 | 대 | 38 | 38 | | | | | |
| 38 | 석평리 | 408-1 | 답 | 6 | 6 | | | | | |
| 39 | 석평리 | 380-1 | 답 | 149 | 149 | | | | | |
| 40 | 석평리 | 381-1 | 답 | 227 | 227 | | | | | |
| 41 | 석평리 | 383-1 | 전 | 33 | 33 | | | | | |
| 42 | 석평리 | 379-1 | 답 | 414 | 414 | | | | | |
| 43 | 석평리 | 384-4 | 전 | 186 | 186 | | | | | |
| 44 | 석평리 | 375-1 | 답 | 289 | 289 | | | | | |
| 45 | 석평리 | 384-2 | 전 | 333 | 333 | | | | | |
| 46 | 석평리 | 385-1 | 전 | 28 | 28 | | | | | |
| 47 | 석평리 | 373-1 | 답 | 132 | 132 | | | | | |
| 48 | 석평리 | 371-1 | 답 | 11 | 11 | | | | | |
| 49 | 석평리 | 345-17 | 답 | 97 | 97 | | | | | |
| 50 | 석평리 | 345-18 | 답 | 195 | 195 | | | | | |
| 51 | 석평리 | 345-19 | 답 | 191 | 191 | | | | | |
| 52 | 석평리 | 362-1 | 답 | 15 | 15 | | | | | |
| 53 | 석평리 | 363-1 | 대 | 5 | 5 | | | | | |
| 54 | 석평리 | 345-20 | 답 | 179 | 179 | | | | | |
| 55 | 석평리 | 363-2 | 대 | 1 | 1 | | | | | |
| 56 | 석평리 | 365-3 | 대 | 19 | 19 | | | | | |
| 57 | 석평리 | 345-21 | 답 | 186 | 186 | | | | | |
| 58 | 석평리 | 345-22 | 답 | 291 | 291 | | | | | |
| 59 | 석평리 | 350-4 | 천 | 15 | 15 | | | | | |
| 60 | 석평리 | 350-3 | 답 | 225 | 225 | | | | | |
| 61 | 석평리 | 206-10 | 답 | 203 | 203 | | | | | |
| 62 | 석평리 | 206-17 | 답 | 13 | 13 | | | | | |
| 63 | 석평리 | 206-11 | 답 | 53 | 53 | | | | | |
| 64 | 석평리 | 206-12 | 답 | 25 | 25 | | | | | |
| 65 | 석평리 | 206-13 | 답 | 117 | 117 | | | | | |
| 66 | 석평리 | 206-14 | 답 | 184 | 184 | | | | | |
| 67 | 석평리 | 206-15 | 답 | 139 | 139 | | | | | |
| 68 | 석평리 | 206-16 | 답 | 156 | 156 | | | | | |
| 69 | 무림리 | 1440-1 | 답 | 122 | 122 | | | | | |
| 70 | 무림리 | 1443-1 | 답 | 110 | 110 | | | | | |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71 | 무림리 | 산271-2 | 임 | 3 | 3 | 남해군 | 남해군 | | | |
| 72 | 무림리 | 1444-1 | 답 | 32 | 32 | | | | | |
| 73 | 무림리 | 1366-1 | 도 | 659 | 659 | | | | | |
| 74 | 무림리 | 1445-1 | 답 | 101 | 101 | | | | | |
| 75 | 무림리 | 1497-2 | 종 | 22 | 22 | | | | | |
| 76 | 무림리 | 1496-1 | 답 | 54 | 54 | | | | | |
| 77 | 무림리 | 1366-2 | 답 | 112 | 112 | | | | | |
| 78 | 무림리 | 1446-1 | 답 | 59 | 59 | | | | | |
| 79 | 무림리 | 1447-1 | 답 | 77 | 77 | | | | | |
| 80 | 무림리 | 1495-1 | 답 | 12 | 12 | | | | | |
| 81 | 무림리 | 1448-1 | 답 | 82 | 82 | | | | | |
| 82 | 무림리 | 1495-2 | 답 | 1 | 1 | | | | | |
| 83 | 무림리 | 1449-1 | 답 | 106 | 106 | | | | | |
| 84 | 무림리 | 1494-1 | 창 | 24 | 24 | | | | | |
| 85 | 무림리 | 1492-3 | 답 | 47 | 47 | | | | | |
| 86 | 무림리 | 1457-2 | 도 | 573 | 573 | | | | | |
| 87 | 무림리 | 1451-1 | 답 | 131 | 131 | | | | | |
| 88 | 무림리 | 1492-2 | 대 | 11 | 11 | | | | | |
| 89 | 무림리 | 1452-1 | 답 | 132 | 132 | | | | | |
| 90 | 무림리 | 1468-1 | 전 | 1 | 1 | | | | | |
| 91 | 무림리 | 1467-1 | 대 | 31 | 31 | | | | | |
| 92 | 무림리 | 1466-5 | 대 | 72 | 72 | | | | | |
| 93 | 무림리 | 1454-6 | 답 | 133 | 133 | | | | | |
| 94 | 무림리 | 1466-4 | 답 | 27 | 27 | | | | | |
| 95 | 무림리 | 1454-10 | 답 | 66 | 66 | | | | | |
| 96 | 무림리 | 1454-7 | 답 | 67 | 67 | | | | | |
| 97 | 무림리 | 1465-1 | 답 | 72 | 72 | | | | | |
| 98 | 무림리 | 1462-1 | 답 | 41 | 41 | | | | | |
| 99 | 무림리 | 1454-11 | 답 | 23 | 23 | | | | | |
| 100 | 무림리 | 1454-8 | 답 | 88 | 88 | | | | | |
| 101 | 무림리 | 1463-1 | 전 | 32 | 32 | | | | | |
| 102 | 무림리 | 1454-9 | 답 | 97 | 97 | | | | | |
| 103 | 무림리 | 1464-3 | 대 | 19 | 19 | | | | | |
| 104 | 무림리 | 1092-4 | 도 | 1 | 1 | | | | | |
| 105 | 무림리 | 1092-3 | 답 | 104 | 104 | | | | | |
| 106 | 무림리 | 1093-1 | 천 | 29 | 29 | | | | | |
| 107 | 무림리 | 1093-2 | 답 | 343 | 343 | | | | | |
| 108 | 무림리 | 1050-2 | 답 | 99 | 99 | | | | | |
| 109 | 무림리 | 1094-1 | 도 | 119 | 103 | | | | | |
| 110 | 무림리 | 1422-25 | 천 | 64 | 64 | | | | | |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11 | 무림리 | 1049-2 | 창 | 1 | 1 | 남해군 | 남해군 | | | |
| 112 | 무림리 | 1049-3 | 답 | 39 | 39 | | | | | |
| 113 | 무림리 | 1422-22 | 답 | 37 | 37 | | | | | |
| 114 | 무림리 | 1422-12 | 천 | 3 | 3 | | | | | |
| 115 | 무림리 | 1047-14 | 천 | 1 | 1 | | | | | |
| 116 | 무림리 | 1047-13 | 천 | 14 | 14 | | | | | |
| 117 | 무림리 | 1048-2 | 천 | 13 | 13 | | | | | |
| 118 | 무림리 | 1422-23 | 답 | 110 | 110 | | | | | |
| 119 | 무림리 | 1095-1 | 천 | 485 | 484 | | | | | |
| 120 | 무림리 | 1422-24 | 답 | 153 | 153 | | | | | |
| 121 | 무림리 | 1422-17 | 천 | 2 | 2 | | | | | |
| 122 | 무림리 | 1101-2 | 답 | 196 | 196 | | | | | |
| 123 | 무림리 | 1422-27 | 대 | 20 | 20 | | | | | |
| 124 | 무림리 | 1422-26 | 대 | 108 | 108 | | | | | |
| 125 | 무림리 | 1041-1 | 천 | 55 | 55 | | | | | |
| 126 | 무림리 | 1422-28 | 대 | 19 | 19 | | | | | |
| 127 | 무림리 | 1422-16 | 천 | 8 | 8 | | | | | |
| 128 | 무림리 | 1422-29 | 대 | 5 | 5 | | | | | |
| 129 | 무림리 | 1040-1 | 천 | 20 | 20 | | | | | |
| 130 | 무림리 | 1102-3 | 답 | 46 | 46 | | | | | |
| 131 | 무림리 | 1124-4 | 대 | 93 | 93 | | | | | |
| 132 | 무림리 | 1126-2 | 대 | 99 | 99 | | | | | |
| 133 | 무림리 | 1125-3 | 대 | 47 | 47 | | | | | |
| 134 | 무림리 | 1127-14 | 대 | 4 | 4 | | | | | |
| 135 | 무림리 | 1127-15 | 대 | 22 | 22 | | | | | |
| 136 | 무림리 | 1126-4 | 대 | 4 | 4 | | | | | |
| 137 | 무림리 | 1127-13 | 대 | 2 | 2 | | | | | |
| 138 | 무림리 | 1127-16 | 도 | 6 | 6 | | | | | |
| 139 | 무림리 | 1126-3 | 도 | 9 | 9 | | | | | |
| 140 | 무림리 | 1128-18 | 도 | 11 | 11 | | | | | |
| 141 | 무림리 | 1140-5 | 잡 | 17 | 17 | | | | | |
| 142 | 무림리 | 1038-40 | 대 | 17 | 17 | | | | | |
| 143 | 무림리 | 1037-28 | 대 | 26 | 26 | | | | | |
| 144 | 무림리 | 1140-6 | 잡 | 60 | 60 | | | | | |
| 145 | 무림리 | 1034-19 | 대 | 11 | 11 | | | | | |
| 146 | 무림리 | 1037-29 | 대 | 2 | 2 | | | | | |
| 147 | 무림리 | 1034-18 | 대 | 82 | 82 | | | | | |
| 148 | 무림리 | 1033-11 | 대 | 51 | 51 | | | | | |
| 149 | 무림리 | 1033-10 | 대 | 71 | 71 | | | | | |
| 150 | 무림리 | 1033-9 | 대 | 50 | 5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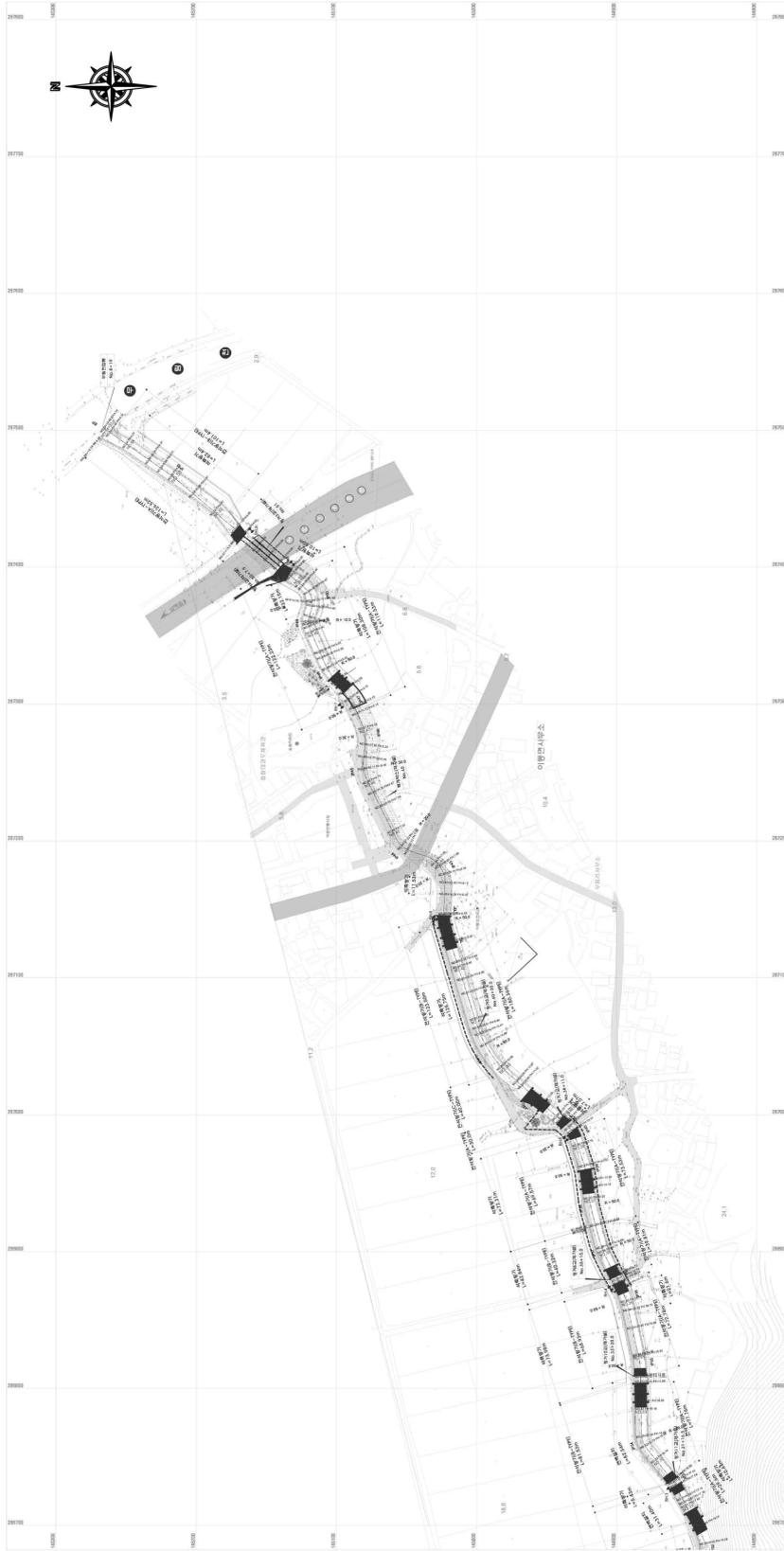
남 해 군 공 보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51 | 무림리 | 1033-12 | 대 | 8 | 8 | 남해군 | 남해군 | | | |
| 152 | 무림리 | 1033-13 | 대 | 73 | 73 | | | | | |
| 153 | 무림리 | 1032-3 | 답 | 191 | 191 | | | | | |
| 154 | 무림리 | 1032-1 | 답 | 45 | 45 | | | | | |
| 155 | 무림리 | 1031-2 | 답 | 250 | 250 | | | | | |
| 156 | 무림리 | 1031-4 | 답 | 65 | 65 | | | | | |
| 157 | 무림리 | 1031-5 | 답 | 12 | 12 | | | | | |
| 158 | 무림리 | 1030-2 | 답 | 175 | 175 | | | | | |
| 159 | 무림리 | 1030-4 | 답 | 25 | 25 | | | | | |
| 160 | 무림리 | 1030-5 | 답 | 14 | 14 | | | | | |
| 161 | 무림리 | 1029-2 | 답 | 177 | 177 | | | | | |
| 162 | 무림리 | 1029-4 | 답 | 13 | 13 | | | | | |
| 163 | 무림리 | 1029-3 | 답 | 65 | 65 | | | | | |
| 164 | 무림리 | 1175-17 | 답 | 17 | 17 | | | | | |
| 165 | 무림리 | 1175-9 | 답 | 19 | 19 | | | | | |
| 166 | 무림리 | 1175-16 | 답 | 40 | 40 | | | | | |
| 167 | 무림리 | 900-4 | 도 | 39 | 39 | | | | | |
| 168 | 무림리 | 1175-15 | 답 | 2 | 2 | | | | | |
| 169 | 무림리 | 1175-18 | 답 | 13 | 13 | | | | | |
| 170 | 무림리 | 899-1 | 도 | 83 | 83 | | | | | |
| 171 | 무림리 | 896-8 | 도 | 17 | 17 | | | | | |
| 172 | 무림리 | 896-7 | 도 | 70 | 70 | | | | | |
| 173 | 무림리 | 1103-24 | 답 | 5 | 5 | | | | | |
| 174 | 무림리 | 1172-3 | 답 | 49 | 49 | | | | | |
| 175 | 무림리 | 1103-25 | 답 | 87 | 87 | | | | | |
| 176 | 무림리 | 896-4 | 도 | 97 | 97 | | | | | |
| 177 | 무림리 | 1103-26 | 답 | 117 | 117 | | | | | |
| 178 | 무림리 | 1171-1 | 답 | 28 | 28 | | | | | |
| 179 | 무림리 | 1103-27 | 답 | 212 | 212 | | | | | |
| 180 | 무림리 | 1103-28 | 답 | 128 | 128 | | | | | |
| 181 | 석평리 | 348-1 | 구 | 256 | 256 | 농림 축산 식품부 | 농림 축산 식품부 | | | |
| 182 | 석평리 | 347-1 | 도 | 337 | 327 | | | | | |
| 183 | 석평리 | 349-4 | 도 | 97 | 97 | | | | | |
| 184 | 석평리 | 209-1 | 구 | 6 | 6 | | | | | |
| 185 | 석평리 | 348-3 | 구 | 2,152 | 2,152 | | | | | |
| 186 | 석평리 | 208-1 | 도 | 1,013 | 1,013 | | | | | |
| 187 | 무림리 | 1458 | 도 | 174 | 174 | | | | | |
| 188 | 무림리 | 1453-1 | 도 | 92 | 92 | | | | | |
| 189 | 무림리 | 1343-1 | 구 | 8 | 8 | | | | | |
| 190 | 무림리 | 901 | 도 | 17 | 17 | | | | | |

| 번호 | 소재지 (이동면)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외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91 | 무림리 | 898 | 도 | 140 | 140 | 농림 축산 식품부 | 농림 축산 식품부 | | | |
| 192 | 무림리 | 1339-1 | 구 | 66 | 66 | | | | | |
| 193 | 무림리 | 897-1 | 도 | 45 | 45 | | | | | |
| 194 | 무림리 | 1179-1 | 도 | 14 | 14 | | | | | |
| 195 | 무림리 | 1175-14 | 답 | 2 | 2 | 재무부 | 재무부 | | | |
| 196 | 석평리 | 1113 | 천 | 7,926 | 3,648 | 국토 교통부 | 국토 교통부 | | | |
| 197 | 석평리 | 1120-1 | 도 | 12 | 12 | | | | | |
| 198 | 석평리 | 1106-10 | 도 | 46 | 46 | | | | | |
| 199 | 석평리 | 1120-2 | 도 | 56 | 56 | | | | | |
| 200 | 석평리 | 1120-5 | 도 | 43 | 43 | | | | | |
| 201 | 석평리 | 1113-3 | 천 | 1,148 | 869 | | | | | |
| 202 | 석평리 | 1106-4 | 도 | 329 | 329 | | | | | |
| 203 | 무림리 | 1802 | 천 | 13,303 | 6700 | | | | | |
| 204 | 무림리 | 1811 | 도 | 688 | 688 | | | | | |
| 205 | 무림리 | 1806-8 | 도 | 4 | 4 | | | | | |
| 206 | 무림리 | 1806-7 | 도 | 238 | 238 | | | | | |
| 207 | 무림리 | 1805-1 | 도 | 49 | 49 | | | | | |
| 208 | 무림리 | 1876-1 | 도 | 35 | 35 | | | | | |
| 209 | 무림리 | 1175-12 | 도 | 32 | 30 | | | | | |
| 210 | 무림리 | 1103-22 | 도 | 69 | 69 | | | | | |
| 211 | 무림리 | 1174-2 | 도 | 178 | 178 | | | | | |
| 212 | 무림리 | 1103-23 | 도 | 17 | 17 | | | | | |
| 213 | 무림리 | 1157-1 | 도 | 75 | 75 | 경상남도 | 경상남도 | | | |
| 214 | 무림리 | 1103-29 | 답 | 73 | 73 | | | | | |
| 215 | 석평리 | 407 | 답 | 13 | 13 | | | | | |
| 216 | 석평리 | 382 | 전 | 76 | 49 | | | | | |
| 합 계 | | | | | 42,222 | 31,206 | | | | |

정거소하천 위치도

S = 1 : 1500



정거소하천, 지구연장(L) = 2.20km

남해군 고시 제2023-1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62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 연번 | 기준점명칭 | 점명 | 원점 | 세계측지계 | 표고 | 위도 | 경도 | 설치일 | 소재지 | 표지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비고 |
|----|-------|-----|----|------------|------------|---------|-------------------|--------------------|-----------------|------|--------------|----|
| 1 | 10304 | 도근점 | 중부 | 248297.527 | 281268.196 | 24.216 | 034°49'38.34427" | 127°53'18.10758" | 남해읍 평리 46-2 | 철재 | 남해군정 | |
| 2 | 10305 | 도근점 | 중부 | 248306.144 | 281397.323 | 21.387 | 034°49'38.58673" | 127°53'23.19152" | 남해읍 평리 101 | 철재 | 남해군정 | |
| 3 | 10306 | 도근점 | 중부 | 248354.83 | 281480.17 | 21.333 | 034°49'40.14257" | 127°53'26.46839" | 남해읍 평리 신49 | 철재 | 남해군정 | |
| 4 | 18216 | 도근점 | 중부 | 259077.944 | 282767.849 | 121.107 | 034°55'27.69519" | 127°54'20.95115" | 철천면 남양리 247-1 | 철재 | 남해군정 | |
| 5 | 18217 | 도근점 | 중부 | 259048.162 | 282823.286 | 115.156 | 034°55'26.71258" | 127°54'23.12446" | 철천면 남양리 248-8 | 철재 | 남해군정 | |
| 6 | 18218 | 도근점 | 중부 | 259004.164 | 282879.973 | 110.406 | 034°55'25.26837" | 127°54'25.34188" | 철천면 금음리 1593 | 철재 | 남해군정 | |
| 7 | 12211 | 도근점 | 중부 | 238638.304 | 288054.029 | 40.189 | 034°44'22.90630" | 127°57'41.47613" | 상주면 양아리 산150-2 | 철재 | 남해군정 | |
| 8 | 12212 | 도근점 | 중부 | 238551.772 | 288041.22 | 32.259 | 034°44'20.10260" | 127°57'40.94016" | 상주면 양아리 산150-3 | 철재 | 남해군정 | |
| 9 | 12213 | 도근점 | 중부 | 238490.129 | 287996.126 | 28.175 | 034°44'18.11649" | 127°57'39.14453" | 상주면 양아리 230 | 철재 | 남해군정 | |
| 10 | 13420 | 도근점 | 중부 | 248124.400 | 290912.483 | 102.469 | 034°49'29.7915" | 127°59'37.5191" | 삼동면 지족리 산103-10 | 철재 | 남해군정 | |
| 11 | 13421 | 도근점 | 중부 | 248141.759 | 290859.017 | 103.438 | 34° 49' 30.37192" | 127° 59' 35.4222" | 삼동면 지족리 산108 | 철재 | 남해군정 | |
| 12 | 13422 | 도근점 | 중부 | 248138.679 | 290770.853 | 104.306 | 34° 49' 30.30028" | 127° 59' 31.95207" | 삼동면 지족리 산116 | 철재 | 남해군정 | |
| 13 | 11385 | 도근점 | 중부 | 244789.323 | 286654.636 | 131.093 | 34° 47' 42.9168" | 127° 56' 48.7502" | 이동면 석평리 산 169-1 | 플라스틱 | 남해군정 | |
| 14 | 11386 | 도근점 | 중부 | 244785.257 | 286690.208 | 128.934 | 34° 47' 42.7740" | 127° 56' 50.1479" | 이동면 석평리 산 171-3 | 철재 | 남해군정 | |
| 15 | 11387 | 도근점 | 중부 | 244844.692 | 286740.500 | 119.255 | 34° 47' 44.6870" | 127° 56' 52.1480" | 이동면 석평리 산 171-1 | 플라스틱 | 남해군정 | |
| 16 | 16459 | 도근점 | 중부 | 245210.156 | 278108.105 | 120.066 | 034°47'59.05813" | 127°51'12.72926" | 서면 서상리 5-2 | 철재 | 남해군정 | |
| 17 | 16460 | 도근점 | 중부 | 245164.874 | 278103.786 | 122.856 | 034°47'57.59003" | 127°51'12.54424" | 서면 서상리 산273-2 | 철재 | 남해군정 | |
| 18 | 16461 | 도근점 | 중부 | 245108.561 | 278032.201 | 113.241 | 034°47'55.78257" | 127°51'09.70960" | 서면 서상리 산278 | 철재 | 남해군정 | |
| 19 | 16462 | 도근점 | 중부 | 245082.744 | 277907.256 | 101.503 | 034°47'54.97930" | 127°51'04.78624" | 서면 서상리 산277-10 | 철재 | 남해군정 | |
| 20 | 10393 | 도근점 | 중부 | 248624.044 | 281025.716 | 42.044 | 034°49'49.00829" | 127°53'08.67983" | 남해읍 풍현리 728-12 | 철재 | 남해군정 | |
| 21 | 10394 | 도근점 | 중부 | 248698.649 | 281037.65 | 47.898 | 034°49'51.42556" | 127°53'09.17536" | 남해읍 풍현리 산21-1 | 철재 | 남해군정 | |
| 22 | 16463 | 도근점 | 중부 | 254393.807 | 276491.394 | 59.929 | 34° 52' 57.4832" | 127° 50' 12.1489" | 서면 정포리 849-3 | 철재 | 남해군정 | |
| 23 | 16464 | 도근점 | 중부 | 254394.609 | 276440.172 | 58.538 | 34° 52' 57.5231" | 127° 50' 10.1323" | 서면 정포리 828-1 | 철재 | 남해군정 | |
| 24 | 12214 | 도근점 | 중부 | 236194.316 | 291794.685 | 58.659 | 34° 43' 2.4226" | 128° 00' 7.5477" | 상주면 상주리 303 | 철재 | 남해군정 | |
| 25 | 12215 | 도근점 | 중부 | 236213.200 | 291824.008 | 57.289 | 34° 43' 3.0258" | 128° 00' 8.7073" | 상주면 상주리 304 | 철재 | 남해군정 | |
| 26 | 16465 | 도근점 | 중부 | 248832.032 | 275078.713 | 83.786 | 034°49'57.39831" | 127°49'14.73104" | 서면 작장리 717 | 철재 | 남해군정 | |
| 27 | 16466 | 도근점 | 중부 | 248852.638 | 275123.267 | 92.922 | 034°49'58.05508" | 127°49'16.49092" | 서면 작장리 724-1 | 철재 | 남해군정 | |
| 28 | 19567 | 도근점 | 중부 | 253257.202 | 289279.105 | 120.87 | 34° 52' 16.85011" | 127° 58' 35.21884" | 창신면 서대리 산219-1 | 기타 | 남해군정 | |
| 29 | 19568 | 도근점 | 중부 | 253281.015 | 289303.377 | 120.22 | 34° 52' 17.61506" | 127° 58' 36.1835" | 창신면 서대리 918 | 철재 | 남해군정 | |
| 30 | 19569 | 도근점 | 중부 | 253356.142 | 289350.407 | 119.19 | 34° 52' 20.03774" | 127° 58' 38.06385" | 창신면 서대리 산211 | 기타 | 남해군정 | |
| 31 | 10395 | 도근점 | 중부 | 250328.943 | 281471.916 | 48.827 | 034°50'44.19851" | 127°53'26.83355" | 남해읍 아산리 1419 | 철재 | 남해군정 | |
| 32 | 10396 | 도근점 | 중부 | 250250.291 | 281593.303 | 47.431 | 034°50'41.61147" | 127°53'31.58345" | 남해읍 아산리 1419 | 철재 | 남해군정 | |
| 33 | 17475 | 도근점 | 중부 | 258049.054 | 281098.654 | 167.934 | 034°54'54.79677" | 127°53'14.83461" | 고현면 남지리 1051 | 철재 | 남해군정 | |
| 34 | 17476 | 도근점 | 중부 | 258129.003 | 281052.603 | 186.086 | 034°54'57.40406" | 127°53'13.04852" | 고현면 남지리 1053 | 철재 | 남해군정 | |
| 35 | 17477 | 도근점 | 중부 | 258164.075 | 281059.493 | 194.438 | 034°54'58.54005" | 127°53'13.33219" | 고현면 남지리 산158-3 | 철재 | 남해군정 | |
| 36 | 17478 | 도근점 | 중부 | 253135.849 | 281206.457 | 47.031 | 034°52'15.34961" | 127°53'17.36473" | 고현면 도마리 1161 | 철재 | 남해군정 | |
| 37 | 17479 | 도근점 | 중부 | 253162.463 | 281191.751 | 44.536 | 034°52'16.21735" | 127°53'16.79502" | 고현면 도마리 1158 | 철재 | 남해군정 | |
| 38 | 17480 | 도근점 | 중부 | 253175.465 | 281204.736 | 43.16 | 034°52'16.63550" | 127°53'17.31076" | 고현면 도마리 1149 | 철재 | 남해군정 |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 연번 | 기준점명칭 | 점명 | 원점 | 세계측지계 | 표고 | 위도 | 경도 | 설치일 | 소재지 | 표지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비고 | |
|----|-------|-----|----|------------|------------|---------|-------------------|--------------------|----------|-----------------|--------------|------|--|
| 39 | 17481 | 도근점 | 중부 | 253191.289 | 281244.419 | 39.251 | 034°52'17.13754" | 127°53'18.87860" | 20221216 | 고현면 도마리 1144-1 | 철재 | 남해군청 | |
| 40 | 13423 | 도근점 | 중부 | 240711.449 | 292542.700 | 186.916 | 34° 45' 28.74335" | 128° 00' 38.72521" | 20221216 | 산동면 봉화리 산507-2 | 철재 | 남해군청 | |
| 41 | 13424 | 도근점 | 중부 | 240706.248 | 292464.829 | 204.266 | 34° 45' 28.60000" | 128° 00' 35.66173" | 20221216 | 산동면 봉화리 2136-6 | 철재 | 남해군청 | |
| 42 | 13425 | 도근점 | 중부 | 240732.909 | 292406.893 | 214.196 | 34° 45' 29.48391" | 128° 00' 33.39457" | 20221216 | 산동면 봉화리 2136-6 | 철재 | 남해군청 | |
| 43 | 13426 | 도근점 | 중부 | 240766.642 | 292266.860 | 248.507 | 34° 45' 30.62401" | 128° 00' 27.90258" | 20221216 | 산동면 봉화리 2136-6 | 철재 | 남해군청 | |
| 44 | 16467 | 도근점 | 중부 | 245362.019 | 276959.576 | 64.522 | 34° 48' 4.3002" | 127° 50' 27.60117" | 20221222 | 서면 서상리 산 240 | 철재 | 남해군청 | |
| 45 | 16468 | 도근점 | 중부 | 245369.810 | 276923.029 | 53.203 | 34° 48' 4.56295" | 127° 50' 26.16609" | 20221222 | 서면 서상리 956-7 | 철재 | 남해군청 | |
| 46 | 16469 | 도근점 | 중부 | 245339.079 | 276859.771 | 37.723 | 34° 48' 3.58299" | 127° 50' 23.66764" | 20221222 | 서면 서상리 956-8 | 철재 | 남해군청 | |
| 47 | 16470 | 도근점 | 중부 | 245315.043 | 276802.124 | 25.46 | 34° 48' 2.81873" | 127° 50' 21.39211" | 20221222 | 서면 서상리 965 | 철재 | 남해군청 | |
| 48 | 10397 | 도근점 | 중부 | 249615.463 | 281240.750 | 48.613 | 34° 50' 21.1149" | 127° 53' 17.4868" | 20221227 | 남해읍 아산리 333-3 | 철재 | 남해군청 | |
| 49 | 10398 | 도근점 | 중부 | 249636.579 | 281182.580 | 50.782 | 34° 50' 21.8168" | 127° 53' 15.2049" | 20221227 | 남해읍 아산리 316-1 | 철재 | 남해군청 | |
| 50 | 19570 | 도근점 | 중부 | 257788.271 | 292482.123 | 95.456 | 34° 54' 42.83117" | 128° 00' 43.11769" | 20230106 | 창신면 대벽리 산121-1 | 철재 | 남해군청 | |
| 51 | 19571 | 도근점 | 중부 | 257842.349 | 292486.981 | 84.793 | 34° 54' 44.58415" | 128° 00' 43.33057" | 20230106 | 창신면 대벽리 산144-2 | 철재 | 남해군청 | |
| 52 | 19572 | 도근점 | 중부 | 257889.596 | 292454.222 | 72.116 | 34° 54' 46.12786" | 128° 00' 42.05909" | 20230106 | 창신면 대벽리 산144-2 | 철재 | 남해군청 | |
| 53 | 11458 | 도근점 | 중부 | 243505.011 | 287227.748 | 51.093 | 34° 47' 1.06950" | 127° 57' 10.81263"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482-4 | 철재 | 남해군청 | |
| 54 | 11459 | 도근점 | 중부 | 243472.456 | 287174.307 | 47.612 | 34° 47' 0.02966" | 127° 57' 8.69884"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산34-4 | 철재 | 남해군청 | |
| 55 | 11460 | 도근점 | 중부 | 243416.542 | 287123.622 | 48.051 | 34° 46' 58.23104" | 127° 57' 6.68471"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695-3 | 철재 | 남해군청 | |
| 56 | 11461 | 도근점 | 중부 | 243309.668 | 287086.387 | 45.839 | 34° 46' 54.77478" | 127° 57' 5.18059"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682-4 | 철재 | 남해군청 | |
| 57 | 11462 | 도근점 | 중부 | 243567.649 | 286824.153 | 162.510 | 34° 47' 3.22588" | 127° 56' 54.96379"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산3-5 | 철재 | 남해군청 | |
| 58 | 11463 | 도근점 | 중부 | 243558.135 | 286803.374 | 168.210 | 34° 47' 2.92354" | 127° 56' 54.14308"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산2-2 | 철재 | 남해군청 | |
| 59 | 11464 | 도근점 | 중부 | 243534.581 | 286785.957 | 164.479 | 34° 47' 2.16463" | 127° 56' 53.44936" | 20230112 | 이동면 신전리 산2-2 | 플라스틱 | 남해군청 | |
| 60 | 17482 | 도근점 | 중부 | 254552.418 | 281721.059 | 20.531 | 34° 53' 1.16387" | 127° 53' 38.12167" | 20230125 | 고현면 도마리 산140-30 | 철재 | 남해군청 | |
| 61 | 17483 | 도근점 | 중부 | 254482.434 | 281637.938 | 16.160 | 34° 52' 58.91719" | 127° 53' 34.82421" | 20230125 | 고현면 도마리 433 | 철재 | 남해군청 | |
| 62 | 17484 | 도근점 | 중부 | 254364.193 | 281572.536 | 15.709 | 34° 52' 55.09957" | 127° 53' 32.20756" | 20230125 | 고현면 도마리 640 | 철재 | 남해군청 | |

남해군 고시 제2023-12호

군계획시설[꽃별테마공원 : 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2-60호(2022.4.20)로 최초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꽃별테마공원 : 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남해 농촌테마공원(꽃별테마공원):도로,주차장,녹지]
- 명 칭 :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및 규모 : 15,126.0㎡(교통시설 6,828.0㎡, 공간시설 8,298.0㎡)

| 구 분 | 합 계 | 교통시설 | | 공간시설 | |
|--------|----------|-------|---------|---------|---------|
| | | 도로 | 주차장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 면 적(㎡) | 15,162.0 | 734.0 | 6,094.0 | 3,134.0 | 5,164.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 경제과)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총괄)

| 구분 | | 계 | 전 | 답 | 임 | 도 | 비고 |
|-----|----------|--------|-----|-------|-------|-------|----|
| 합계 | 필지수 | 39 | 3 | 13 | 4 | 19 | |
| | 편입면적 (㎡) | 15,126 | 426 | 8,326 | 1,974 | 4,400 | |
| 사유지 | 필지수 | 6 | 2 | 3 | - | 1 | |
| | 편입면적 (㎡) | 715 | 300 | 410 | - | 5 | |
| 공유지 | 필지수 | 32 | 1 | 10 | 4 | 17 | |
| | 편입면적 (㎡) | 13,362 | 126 | 7,916 | 1,974 | 3,346 | |
| 국유지 | 필지수 | 1 | - | - | - | 1 | |
| | 편입면적 (㎡) | 1,049 | - | - | - | 1,049 | |

2. 편입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명서

■ 군계획시설별 편입토지조서

| 구분 | | 필지수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합계 | | - | 15,126 | 100.0 | |
| 교통시설 | 도로 | 7 | 734 | 4.9 | |
| | 주차장 | 18 | 6,094 | 40.3 | |
| | 소계 | | 6,828 | 45.2 | |
| 공간시설 | 완충녹지1 | 3 | 229 | 1.5 | |
| | 완충녹지2 | 18 | 2,905 | 19.2 | |
| | 경관녹지 | 17 | 5,164 | 34.1 | |
| | 소계 | | 8,298 | 54.8 | |

■ 세부 편입토지조서

| 구 분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 고 | |
|----------|---------------|-----|-------|-------|----------|----------|-------|-------|---|
| 교통 시설 | 도로 | 1 | 양아리 | 140-2 | 도 | 132 | 126 | 남해군 | |
| | | 2 | 양아리 | 140-4 | 도 | 383 | 27 | 남해군 | |
| | | 3 | 양아리 | 140-5 | 도 | 219 | 24 | 남해군 | |
| | | 4 | 양아리 | 1946 | 도 | 5,802 | 38 | 국토교통부 | |
| | | 5 | 양아리 | 산56-1 | 도 | 543 | 122 | 남해군 | |
| | | 6 | 양아리 | 산56-4 | 도 | 555 | 97 | 남해군 | |
| | | 7 | 양아리 | 산57-5 | 도 | 1,133 | 300 | 남해군 | |
| | 소 계 | | | | | - | 734 | - | - |
| | 주차장 | 1 | 양아리 | 140-2 | 도 | 132 | 3 | 남해군 | |
| | | 2 | 양아리 | 140-3 | 답 | 79 | 79 | 손0호 | |
| | | 3 | 양아리 | 140-5 | 도 | 219 | 195 | 남해군 | |
| | | 4 | 양아리 | 141 | 전 | 231 | 225 | 박0인 | |
| | | 5 | 양아리 | 142-1 | 답 | 995 | 907 | 남해군 | |
| | | 6 | 양아리 | 142-2 | 답 | 1,527 | 1,245 | 남해군 | |
| | | 7 | 양아리 | 142-3 | 답 | 565 | 266 | 남해군 | |
| | | 8 | 양아리 | 143 | 답 | 1,035 | 718 | 남해군 | |
| | | 9 | 양아리 | 144 | 답 | 942 | 401 | 남해군 | |
| | | 10 | 양아리 | 145 | 답 | 1,174 | 375 | 남해군 | |
| | | 11 | 양아리 | 146 | 답 | 714 | 22 | 남해군 | |
| | | 12 | 양아리 | 147 | 답 | 926 | 3 | 남해군 | |
| | | 13 | 양아리 | 1946 | 도 | 5,802 | 99 | 국토교통부 | |
| | | 14 | 양아리 | 산56 | 임 | 735 | 735 | 남해군 | |
| | | 15 | 양아리 | 산56-1 | 도 | 543 | 248 | 남해군 | |
| | | 16 | 양아리 | 산56-4 | 도 | 555 | 212 | 남해군 | |
| | | 17 | 양아리 | 산57-1 | 임 | 307 | 222 | 남해군 | |
| | | 18 | 양아리 | 산57-5 | 도 | 1,133 | 139 | 남해군 | |
| | 소 계 | | | | | - | 6,094 | - | |
| | 교통시설 편입 토지 소계 | | | | | - | 6,828 | - | |
| 공간 시설 | 완충 녹지1 | 1 | 양아리 | 140-4 | 도 | 383 | 1 | 남해군 | |
| | | 2 | 양아리 | 1946 | 도 | 5,802 | 156 | 남해군 | |
| | | 3 | 양아리 | 산56-1 | 도 | 543 | 72 | 남해군 | |
| | 소 계 | | | | | - | 229 | - | |
| | 완충 녹지2 | 1 | 양아리 | 139-2 | 답 | 545 | 39 | 남해군 | |
| | | 2 | 양아리 | 139-3 | 도 | 7 | 5 | 김0만 | |
| 3 | | 양아리 | 139-4 | 답 | 499 | 9 | 남해군 | | |

| 구 분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 고 | | |
|---------------|-----------|----------|-------|--------|----------|----------|-------|-------|-----|---|
| 공간 시설 | 완충 녹지2 | 4 | 양아리 | 165-6 | 전 | 171 | 126 | 남해군 | | |
| | | 5 | 양아리 | 165-9 | 도 | 165 | 1 | 남해군 | | |
| | | 6 | 양아리 | 165-10 | 도 | 549 | 233 | 남해군 | | |
| | | 7 | 양아리 | 165-11 | 전 | 72 | 69 | 박0률 | | |
| | | 8 | 양아리 | 165-13 | 도 | 477 | 33 | 남해군 | | |
| | | 9 | 양아리 | 165-14 | 도 | 60 | 60 | 남해군 | | |
| | | 10 | 양아리 | 산56-4 | 도 | 555 | 91 | 남해군 | | |
| | | 11 | 양아리 | 산57-5 | 도 | 1,133 | 316 | 남해군 | | |
| | | 12 | 양아리 | 산57-6 | 임 | 1,995 | 551 | 남해군 | | |
| | | 13 | 양아리 | 산57-7 | 도 | 455 | 247 | 남해군 | | |
| | | 14 | 양아리 | 산60-6 | 도 | 531 | 229 | 남해군 | | |
| | | 15 | 양아리 | 산60-7 | 도 | 101 | 46 | 남해군 | | |
| | | 16 | 양아리 | 산145-3 | 도 | 1,023 | 5 | 남해군 | | |
| | | 17 | 양아리 | 산148-1 | 도 | 1,289 | 464 | 남해군 | | |
| | | 18 | 양아리 | 산148-2 | 임 | 936 | 381 | 남해군 | | |
| | | 소 계 | | | | | - | 2,905 | - | - |
| | | 경관 녹지 | 1 | 양아리 | 113-1 | 답 | 197 | 197 | 강0남 | |
| | | | 2 | 양아리 | 113-4 | 도 | 2 | 2 | 남해군 | |
| | 3 | | 양아리 | 114 | 답 | 134 | 134 | 강0남 | | |
| | 4 | | 양아리 | 114-1 | 도 | 18 | 18 | 남해군 | | |
| 5 | 양아리 | | 141 | 전 | 231 | 6 | 박0인 | | | |
| 6 | 양아리 | | 142-1 | 답 | 995 | 88 | 남해군 | | | |
| 7 | 양아리 | | 142-2 | 답 | 1,527 | 282 | 남해군 | | | |
| 8 | 양아리 | | 142-3 | 답 | 565 | 299 | 남해군 | | | |
| 9 | 양아리 | | 143 | 답 | 1,035 | 317 | 남해군 | | | |
| 10 | 양아리 | | 144 | 답 | 942 | 531 | 남해군 | | | |
| 11 | 양아리 | | 145 | 답 | 1,174 | 799 | 남해군 | | | |
| 12 | 양아리 | | 146 | 답 | 714 | 692 | 남해군 | | | |
| 13 | 양아리 | | 147 | 답 | 926 | 923 | 남해군 | | | |
| 14 | 양아리 | | 1946 | 도 | 5,802 | 756 | 국토교통부 | | | |
| 15 | 양아리 | | 산 | 도 | 543 | 3 | 남해군 | | | |
| 16 | 양아리 | | 산 | 임 | 307 | 85 | 남해군 | | | |
| 17 | 양아리 | | 산 | 도 | 1,133 | 32 | 남해군 | | | |
| 소 계 | | | | | - | 5,164 | - | | | |
| 공간시설 편입 토지 소계 | | | | | - | 8,298 | - | | | |
| 합 계 | | | | | | 15,126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본번 | 부번 |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계 | | | | | 27,223 | 15,126 | | | | | | |
| 1 | 남해군 양아리 | 113 | 1 | 답 | 197 | 197 | 강0남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 | | |
| 2 | " | 113 | 4 | 도 | 2 | 2 | 남해군 | | | | | |
| 3 | " | 114 | | 답 | 134 | 134 | 강0남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 | | |
| 4 | " | 114 | 1 | 도 | 18 | 18 | 남해군 | | | | | |
| 5 | " | 139 | 2 | 답 | 545 | 39 | 남해군 | | | | | |
| 6 | " | 139 | 3 | 도 | 7 | 5 | 김0만 | 남해군 양아리 | | | | |
| 7 | " | 139 | 4 | 답 | 499 | 9 | 남해군 | | | | | |
| 8 | " | 140 | 2 | 도 | 132 | 129 | 남해군 | | | | | |
| 9 | " | 140 | 3 | 답 | 79 | 79 | 손0호 | 남해군 양아리 | | | | |
| 10 | " | 140 | 4 | 도 | 383 | 28 | 남해군 | | | | | |
| 11 | " | 140 | 5 | 도 | 219 | 219 | 남해군 | | | | | |
| 12 | " | 141 | | 전 | 231 | 231 | 박0인 | 남해군 양아로540번길 | | | | |
| 13 | " | 142 | 1 | 답 | 995 | 995 | 남해군 | | | | | |
| 14 | " | 142 | 2 | 답 | 1,527 | 1,527 | 남해군 | | | | | |
| 15 | " | 142 | 3 | 답 | 565 | 565 | 남해군 | | | | | |
| 16 | " | 143 | | 답 | 1,035 | 1,035 | 남해군 | | | | | |
| 17 | " | 144 | | 답 | 942 | 932 | 남해군 | | | | | |
| 18 | " | 145 | | 답 | 1,174 | 1,174 | 남해군 | | | | | |
| 19 | " | 146 | | 답 | 714 | 714 | 남해군 | | | | | |
| 20 | " | 147 | | 답 | 926 | 926 | 남해군 | | | | | |
| 21 | " | 165 | 6 | 전 | 171 | 126 | 남해군 | | | | | |
| 22 | " | 165 | 9 | 도 | 165 | 1 | 남해군 | | | | | |
| 23 | " | 165 | 10 | 도 | 549 | 233 | 남해군 | | | | | |
| 24 | " | 165 | 11 | 전 | 72 | 69 | 박0률 | | | | | |
| 25 | " | 165 | 13 | 도 | 477 | 33 | 남해군 | | | | | |
| 26 | " | 165 | 14 | 도 | 60 | 60 | 남해군 | | | | | |
| 27 | " | 1946 | | 도 | 5,802 | 1,049 | 국토교통부 | | | | | |
| 28 | " | 산56 | | 임 | 735 | 735 | 남해군 | | | | | |
| 29 | " | 산56 | 1 | 도 | 543 | 445 | 남해군 | | | | | |
| 30 | " | 산56 | 4 | 도 | 555 | 400 | 남해군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본번 | 부번 |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31 | 남해군 양아리 | 산57 | 1 | 임 | 307 | 307 | 남해군 | | | | | |
| 32 | “ | 산57 | 5 | 도 | 1,133 | 787 | 남해군 | | | | | |
| 33 | “ | 산57 | 6 | 임 | 1,995 | 551 | 남해군 | | | | | |
| 34 | “ | 산57 | 7 | 도 | 455 | 247 | 남해군 | | | | | |
| 35 | “ | 산60 | 6 | 도 | 531 | 229 | 남해군 | | | | | |
| 36 | “ | 산60 | 7 | 도 | 101 | 46 | 남해군 | | | | | |
| 37 | “ | 산145 | 3 | 도 | 1,023 | 5 | 남해군 | | | | | |
| 38 | “ | 산148 | 1 | 도 | 1,289 | 464 | 남해군 | | | | | |
| 39 | “ | 산148 | 2 | 임 | 936 | 381 | 남해군 | | | | | |

남해군 고시 제2023-13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0-1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269m
- 라. 사업비 : 금2,800,000,000원(금이십팔억원)
- 마.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바.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 합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 고 |
|---------|------------------|---------|-----------|-----------|-----|
| 사업내용 |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 실시설계 | - 정비사업 | - 정비사업 | |
| 사업비(천원) | 2,800,000 | 200,000 | 1,222,000 | 1,378,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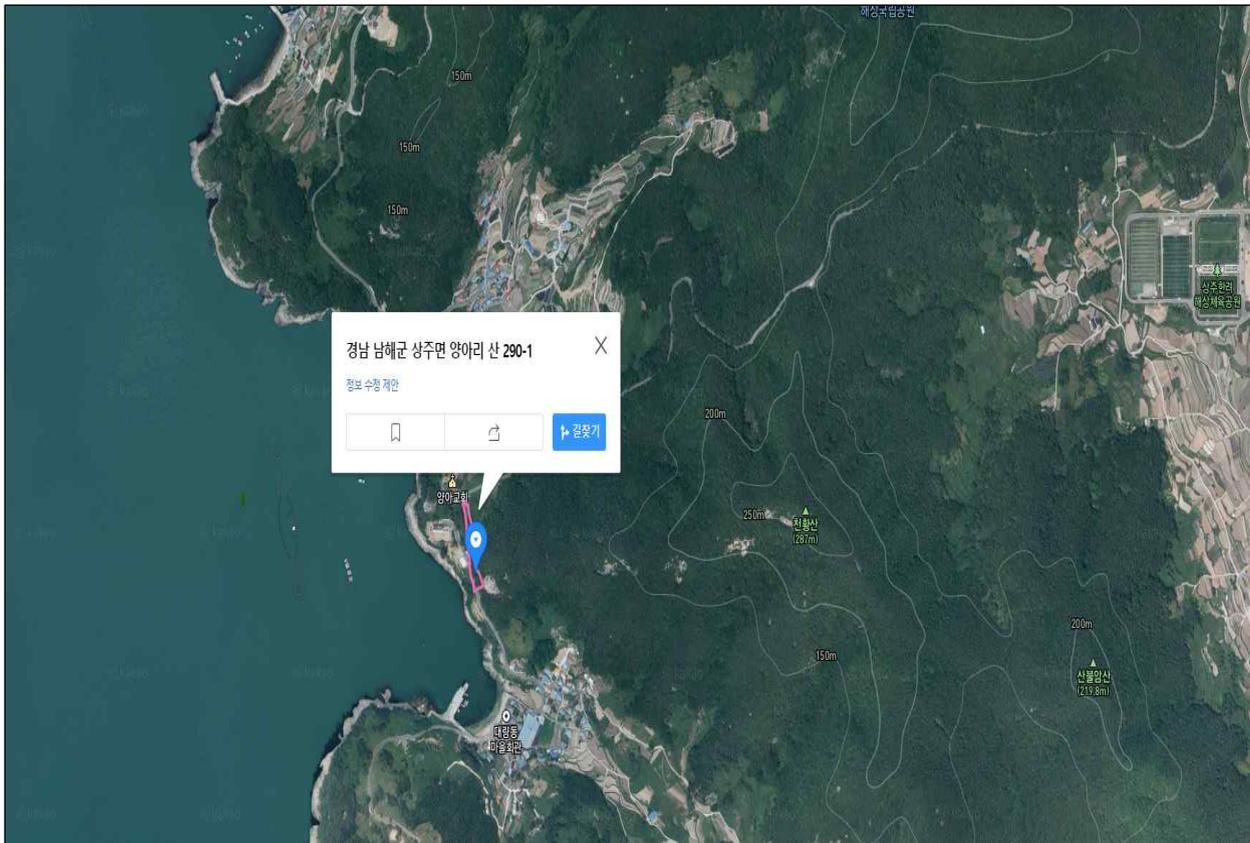
6.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8.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 편입 토지 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지분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
| 1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산291-2 | 임 | 19 | 19 | 1/1 | 박태○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박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0 9번길 | 재산세 납부자 | |
| 2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산290-1 | 임 | 2,609 | 2,609 | 1/1 | 김해김 씨남해 송화종 친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560번길 | | | | |
| 3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808 | 전 | 69 | 69 | 1/1 | 전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 | | | |
| 4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809 | 전 | 112 | 112 | 1/1 | 미등기 | | 김영○ | | 토지대장상 소유자 | |
| 5-1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산289-2 | 임 | 880 | 880 | 1/1 | 김옥○ | 부산시 서구 괴정동 | 김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 자녀 | |
| 5-2 | | | | | | | | | 김희○ | 경남 김해시 삼계로 | 자녀 | |
| 5-3 | | | | | | | | | 김강○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7길 | 자녀 | |
| 5-4 | | | | | | | | | 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 자녀 | |
| 5-5 | | | | | | | | | 김판○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자녀 | |
| 6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812 | 전 | 258 | 258 | 1/1 | 빈영○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560번길 | | | | |
| 7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813-1 | 전 | 286 | 286 | 1/1 | 김태○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 | | |

남해군 고시 제2023-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해양발전과장)
3. 주 소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 외 4필지(2182-2인근)
4. 점용목적 : 어촌뉴딜사업 상주항 테마수변공원 조성 관련 지장물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 외 4필지(2182-2인근)
6. 점용면적 : 249m²
7. 점용기간 : 2023. 2. 9. ~ 2023. 12. 31.(준공 후 영구점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0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남 해 군 수

| | | | | |
|---------------------|--------------|------------------------------|---------------------|------------------|
| 시행자 (점용·사용자) | 대표자 (성 명) | 성동0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00 |
| | 소하천명 | | 심천천 | |
| 공사 (점용·사용) 개요 |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127-1번지(1051관련) | | |
| | 면적 | 1m ²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m ² |
| | 기간 | 2023. 1. 27. ~ 2027. 12. 31. | | |
| | 목적 및 사유 | 우수관로 매설 | | |

남해군 공고 제2023-127호

2023년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남 해 군 수

1. 용자규모 : 36억원
2. 신청기간 : 2023. 2. 6. ~ 자금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금융·보험업,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붙임 참고)
 -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2023. 2. 6. 기준)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4.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
| 소 상 공 인 육 성 자 금 | 50,000천원 이내 | 2년간 연 2.5% 이내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착한가격업소 : 연3.0% 이내 특례지원

5.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대출자 부담

6.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경남은행, 남해신협, 새남해농협, 동남해농협, 남해농협, 창선농협, 미송새마을금고, 창선새마을금고, 새남해새마을금고, 남해군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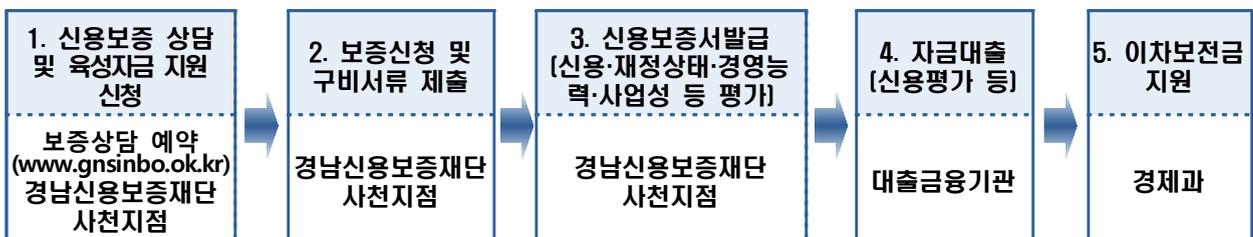
7.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 예약·신청·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취급은행 11개소) | 대출완료 및 통보 (취급은행 11개소) |
|---|---|----------------------|--------------------------|
| 보증상담 예약 (www.gnsinbo.or.kr)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대출결과 통보 |

-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 835-7481, Fax 717-7481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 2층】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세계약서 사본(임차인일 경우), 매출액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등)
-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8. 대출신청 절차



9. 용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

- 1. 사업장을 남해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3.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6개월분 지원
 - 대출 실행 6개월 후 보증 유지 시 남해군에서 보증수수료 지원
- 잔여기간 보증수수료 대출자 부담

11. 기타 유의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 접수 시 본인 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본인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2.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835-7481)
- 남해군청 경제과 (☎860-3193)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 분류 | 업 종 |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 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
| 91121 | |
| 91291 | 골프장 운영업 |
| 91249 | 무도장 운영업 |
| 9612 중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4610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46209 중 | 담배중개업 |
| 46333 | 앞담배 도매업 |
| 64 | 담배 도매업 |
| 65 | 금융업 |
| 66 | 보험 및 연금업 |
| 75993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 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 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 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 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 업종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 ^{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남해군 공고 제2023-134호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나.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4조, 제5조)
 - 다.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2월 20일 18:00까지
 -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2413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 : 055-860-8713, FAX : 055-860-8798, E-Mail : pmk11@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5. “섭취장애”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 2. 식생활 행태 조사
- 3. 영양상태 조사
-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남 해 군 수

| | | | | |
|---------------------|--------------|--------------------------------------|---------------------|-------------------|
| 시행자 (점용·사용자) | 대표자 (성 명) | 남해군수 (건설교통과장)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소하천명 | | 오동천 | | |
| 공사 (점용·사용) 개요 |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번지 (1178-1인근) | | |
| | 면적 | 528㎡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 | 기간 | 2023. 2. 3. ~ 2023. 12. 31.(준공이후 영구) | | |
| | 목적 및 사유 | 오동마을 무명교 재가설공사 | | |

남해군 공고 제2023-150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2. 전부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 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조문 신설
-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조문 신설
- 다.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전부개정 시행 (법제처 자치법규 제·개정 방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1조~제2조)
- 나.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개정 전 | 개정 후 |
|------------------|-----------------------------------|
| ▶ 관련 심의·의결 기능 없음 |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4조)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2월 2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9, 팩스 055-860-3703,
이메일 everbye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이메일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전화 055-860-3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53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채포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m ²)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정치 제158호 | 정치망어업 (대형) | 멸치 등 | 미조송 정 | 258,000 | 2023.02.06 2033.02.05 (10년)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59 | 정상진 외 1인 | 재개발 |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채포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m ²)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정치 제88호 | 정치망어업 (대형) | 멸치 등 | 미조 송정 | 258,000 | 2013.02.06. 2023.02.05. (10년)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59 | 정상진 외 1인 | 어업면허유 효기간만료 |

남해 정치 제 15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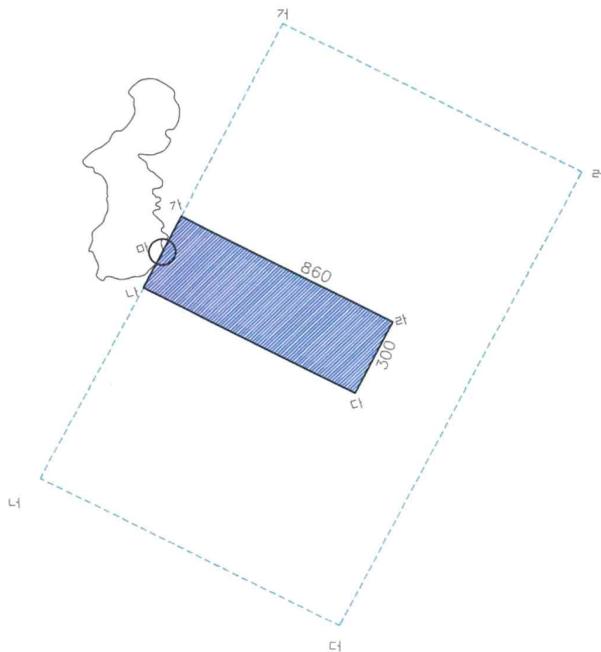
축 척 : $\frac{1}{25,000}$

(마) N 34-45-04.64, E 128-04-23.7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58,000 m²

| 보호구역 | | | 경 위 도 (WGS) | | | |
|------|--------------|---------------|-------------|--------------|---------------|--------|
| | 위 도 | 경 도 | | 위 도 | 경 도 | 거 리 |
| 거 | 34-45-32.436 | 128-04-40.560 | 가 | 34-45-08.979 | 128-04-26.388 | 가나 300 |
| 너 | 34-44-36.900 | 128-04-06.823 | 나 | 34-45-00.294 | 128-04-21.062 | 나다 960 |
| 더 | 34-44-19.317 | 128-04-49.364 | 다 | 34-44-47.692 | 128-04-51.225 | 다라 300 |
| 러 | 34-45-14.751 | 128-05-23.088 | 라 | 34-44-56.377 | 128-04-56.552 | 마가 960 |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3-163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남 해 군 수

■ 마을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 종류 | 포획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마을 제314호 | 마을어업 | 정착성 수산동식물 | 창선 소벽 | 112,000 | 2023.2.06. ~ 2033.2.05. |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 소벽어촌계 | 제87호 재개발 |

※ '22 / '23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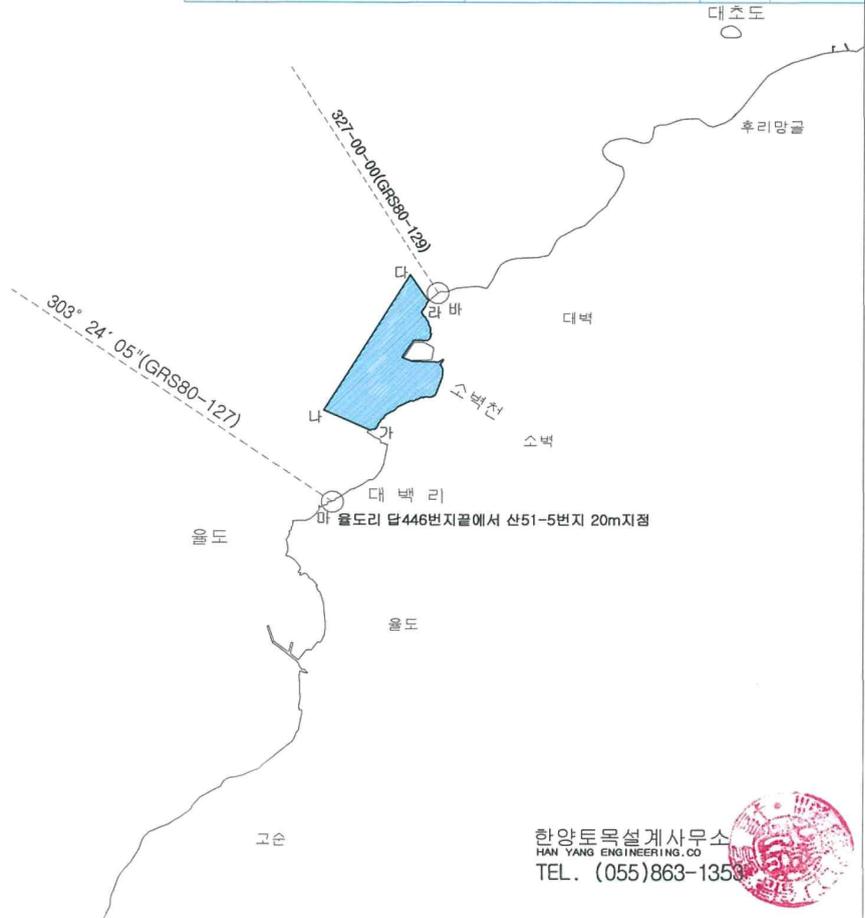
■ 마을어업면허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 종류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마을어업 면허기간 |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면허기간 | 유효기간 연장 | 주 소 | 성 명 | |
| 남해마을 제87호 | 마을어업 | 정착성수산 동식물 | 창선 소벽 | 152,000 | 2003.02.06. ~ 2013.02.05. | 2013.02.06. ~ 2023.02.05. |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 소벽 어촌계 |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3/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축 척: 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벽지선
4. 기점 및 각점 :
 (마): 울도리 담446번지끝에서 산51-5번지 20m (N34-54-11.459, 127-59-32.663)
 (바): 대벽소벽경계 인조표석 (N34-54-36.897, E127-59-47.26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어장의 면적 : **112,000 m²**

| 경 위 도 | | | | (WGS) | |
|-------|--------------|---------------|-----|-------|--|
| | 위도 | 경도 | 거리 | | |
| 가 | 34-54-20.181 | 127-59-37.929 | 가-나 | 181 | |
| 나 | 34-54-22.558 | 127-59-31.385 | 나-다 | 593 | |
| 다 | 34-54-39.085 | 127-59-43.353 | 다-라 | 117 | |
| 라 | 34-54-35.934 | 127-59-45.922 | | | |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3-168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마.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지원 요청 및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사. 자연재난 유형 추가로 실무반의 임무 변경(안 별표 1)
 - 풍수해, 지진 →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한파 추가
 - 아.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단계 편성기준 변경(안 별표 4)
 - 비상단계 · 비상 1·2단계 → 비상 1·2·3단계
 -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부변경사항 정비(안 별표 2, 별표3, 별표 5)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의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2. 차장 : 부군수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 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해군 공무원과 남해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이 경우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해당 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3.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5]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군정소식 → 공고/고시)